

신청접수번호 : m-RAPA-2104-2346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남전주IC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 외 55필지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1동, 102동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1동, 102동 2. 지하1층 : 103동 PIT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공개방법은 조합 및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 예정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1년 05월 06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남전주IC지역주택조합	양선근
대리인	(유)건축사사무소 에 이치건축	김종태 (인)동의함

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